

검 토 보 고 서

안 건 명	부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 · 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진흥과

(2017. 4. 4)

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유 준 상]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안건명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 제출일자 : 2017년 3월 27일(월)
- 제출자 : 마포구청장

3. 의안 회부일자

- 2017년 3월 27일(월)

4.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

5. 개정이유

- 마포아트센터의 사용료 징수기준 등을 각 시설의 특성과 이용현황을 고려하여 조정하고 사용료 징수 및 반환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6. 주요 개정 내용

- 가. 공연장 및 전시일 사용 시 사용예정일의 60일까지 납부하도록 변경
(제13조제1항)
- 나. 공연장 및 전시실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한 경우 반환규정 마련
(제13조제1항)
- 다. 오후10시부터 익일 오전6시까지 공연대관의 경우 대관료 할증
(별표 제1호 가목(8))
- 라. 문화동 증축부분 스튜디오2(2층), 스튜문화3(3층)의 사용료 신설
(별표 제1호 나목(6))
- 마. 문화체육프로그램 이용 주차요금을 프로그램 이용시간 초과 1시간30분까지 무료로 변경하고 일부 주차료 상향조정(별표 제1호나목(7))
- 바. 기타 문화·체육프로그램 사용료 일부기준 변경(별표 제2호나목(1), (2))

7.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공연장·전시실, 문화·체육시설 및 독서실 등 복합공간인 마포아트센터의 사용료 징수기준 등을 각 시설의 특성과 이용현황을 고려하여 조정하고 사용료 징수 및 반환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검토의견으로는

공연장 및 전시실 대관 후 사용일이 임박하여 대관을 취소하는 경우 운영에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고, 시설이용자에 대한 과도한 주차료 면제로 인한 주차공간부족 해결방안 및 문화동 증축 공간에 대한 사용료 징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됨.

다만, 수수료 징수기준이 너무 낮아 주변 동종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들과 마찰이 없는지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하며, 마포아트센터 본연의 출범취지에 맞게 체육시설 및 공연장 운용의 개선은 꾸준히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또한, 별표 제1호나목(6) 참고에 “단, 스튜디오3의 경우 식당 등으로 장기 사용허가한 경우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법령 및 조례 규정에 따른다.” 는 항목은 스튜디오3이 식당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근거로 보여 부적절하다고 사료됨.